



건물도피는 방치되어야 하나?

—서울시 지부 주최 좌담회에서—

「파괴는 건설이다」라는 낱말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재개발의 의미로 쓰여지는 미덕의 말로서 납득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현실에 직면해 있어 이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협회 서울시지부는 2월13일 건물도피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중에 중부 이북 지방에 내린 폭설은 영동지방에서 200여체의 가옥이 무너짐을 비롯하여 1월 중에 서울 천호동의 합동영화촬영소의 1천명 건물 3동이 완전히 도피되었고 공사 중의 도동시장 안 건물과 구로동 베리야스공장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다. 이러한 건물들은 모두 해방 이후 신축된 건물로서 특히 4, 5년 전에 지은 건물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옛 건물보다 신축건물이 낡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부 유럽, 북미주 등 우리나라 보다 수십 배의 적설량을 가진 나라에서 눈 때문에 건물이 붕괴했다는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설량 30cm 내외에서 설화를 입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론이다.

최근 건물 붕괴로 해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 건축계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특히 이 좌담회에서는 해빙기의 건물도피 원인과 건축계의 실태를 진단했는데 성수동 촬영소의 경우 정식허가 절차를 받은 건물이나 27미터나 되는 철골을 10미터 간격으로 벽 위에 얹어 철골 하나가 받은 하중은 약 27톤으로 계상되어 과연 그 철골의 구조와 질이 건널만 했는지 의심스럽다.

붕괴의 원인은 설계상의 착오, 날림공사에서 예상되는데 설계상의 착오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하중계산서에서 주무관청의 검토로 예방될 수 있다. 날림공사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건축주의 횡포와 무지에 있다고 지적, 시공업자나 건축주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 시공하거나 약한 자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업자들의 덤핑이나 또는 건축의 확실한 계획, 예산이 없고 다만 건축사는 설계와 건축 허가만을 해주고 설계한 건축의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즉 감리의 불충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착공에서 준공에 이

르기 까지 건축자재, 양생, 공정, 현장 관리 등 설계원안대로 완전한 건물이 이루어지도록 일체의 것을 감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관리가 충실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신축건물의 80%가 엄밀히 말해서 위법 또는 불법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구미 외국의 경우는 설계와 동시에 감리계약을 맺는데 감리를 맡은 책임은 철저하다.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 명예와 책임을 걸기 때문에 시공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또 감리가 불충분해지는 이유로 돈과 시간에 얽매인 시공업자가 자격 없는 감리자와 결탁하여 철근의 수나 양을 줄이거나 콘크리트 배합도 낡임으로 하여 12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6층까지 지어놓고 나중에 완성하려고 기둥을 까보았더니 철근을 반밖에 안써 그 이상 올릴 수 없는 웃지 못할 비극의 실례가 있고, 한편 상당히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대로 시공할 때 건축주 자신이 철근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었다고 앞장서서 일부를 빼라고 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비일 비재하다.

건물 뿐만 아니라 주택에서도 감리는 중요하다. 집장사 집이 한 해도 넘기 전에 기초가 내려 앉고 블록에 금이 가는 것은 성토한 곳에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날림공사를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국에서 처럼 설계자가 감리까지 맡아 모든 책임을 건축사가 지게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의 준공검사제도에 있어서 일부에서 이 과정을 적당히 넘겨 도피의 원인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과 더불어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건축물은 안전하게 설계된다. 그러나 설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감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는 일어난다.

결국 감리의 철저한 실시를 위한 행정체계의 확립과 건축사가 책임지는 시공 등이 시급한 과제로 좌담회의 결론이 나왔다.